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 : 2025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
관한 고시

◇ 제 · 개정 이유

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3조 제9호(졸업의 기준), 제9조(자격 요건), 제11조(대출 금리) 제1항, 제16조의2(이자의 면제) 제2항, 제17조(대출 원리금 계산) 제3항 및 제4항, 제18조(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) 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(대출 신청) 제1항에 따라 '25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, 대출금리 등에 관해 고시하고자 함

◇ 주요내용 : 붙임 고시문과 같음

붙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고시문 1부. 끝.